

국가기록물 관리의 현황에 관한 발전적 제언*

A Study on the Record Management of National Archives of Korea

김 성수(Sung-Soo Kim)**

◁ 목 차 ▷

1 서론	5 기록물관리법 법령 보완의 문제
2 우리나라 국가기록물 관리의 현황	6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 문제
3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 문제	7 결 론
4 국가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사업 문제	<참고문헌>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기록물 관리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한 논문이다.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의 제고(提高) 문제, 2)국가기록물 보존서고의 신축 관련 문제, 3)기록물관리법의 법령 개정·보완의 문제, 4)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 문제.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부는 물론이고 입법부와 사법부 등의 산하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들을 총합(總合)·수집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명실상부하게 종합적으로 관장(管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함을 파악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행정자치부 내에서 최소한 차관급의 기관으로 성장·승격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2) '국가기록물(國家記錄物) 보존서고(保存書庫) 신축(新築)사업'의 문제는, 이 신축 건물을 우리나라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국가(國家)를 대표(代表)하는 상징적(象徵的)인 건축물(建築物)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통령기록관도 아울러 입주하여야 함을 유념하여, 이 건물에 우리나라의 대표(代表)적인 기록물(記錄物)이나 위인(偉人) 등의 형상을 상징(象徵)할 수 있는 예술적 조형물(造形物) 및 장식물(裝飾物)의 설치가 요구됨을 주장하고, 이에 따른 <기획예산처>의 재정적 지원을 당부하였다.

3)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법령 개정·보완의 문제를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 강화의 방안, ②비공개기록물의 생산의무화 및 비밀보호의 규정으로 구분하여 고구(考究)하였다. 그 결과,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제5조와 제6조 및 그에 따른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삼부(三府: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들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총합적으로 수집되고, 이 기관에서 모든 국가기록물들을 관장(管掌)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提案)하였다. 그리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누락되어 있는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생산의무 및 이들 기록물에 대한 비밀보호의 규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의 문제는, 현행기록물관리법의 시행령 제40조에 제시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조건을 완화(緩和)하여,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등을 그 최소기준으로

* 이 연구는 청주대학교 교수해외파견(2001-2002)에 따른 연구결과보고서를 겸하는 논문임.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 / muyokss@hanmail.net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의 실무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이들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그 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밖에 본 장의 연구에서는 기록관리사의 등급과 그 자격요건을 각각 구분하여 보았다.

<ABSTRACT>

In this research the issues of record management of national archives in Korea a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1) improving the status of the Central Archives of Korea, 2) constructing a new national archives, 3) revising the law on the record management, 4) creating qualifications for a professional administrator for Archivist.

1) In order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the Central Archives of Korea, it is very urgent to create a systematic mechanism in which the Central Archives oversees and administers public archives(documents) collected from all the public institutions not only under the Administration but also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ial authorities.

2) This paper suggests that a new National Archives should be a symbolic building representing Korea as archives. Considering the fact that Presidents archives will be a part of this new National Archives, it also suggests that artistic and decorative pieces which embody Korea's representative archives or people should be included in the building. The budget for these should be supplied by the government.

3) This paper looks at the matter of revising the law on Record Management in two respects: ①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the Central Archives of Korea, ②making it obligatory to produce archives not open to the public, or making a protection clause for secret archives.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Central Archives of Korea will be able to collect all the public archives from all the public institutions, and to oversee and administer them by revising the 5th and 6th clauses of the current law on the record management. It also proposes that some laws which make it obligatory to produce archives for documents not open to the public, and which protect those secrecy.

4) Regarding the qualifications for a professional administrator for the record management, this paper suggests lowering the qualification a little to the bachelor's degree of the record management. Also it suggest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ersons in charge of the record management in public institutions and acknowledging their qualifications after a certain period of training at the Central Archives of Korea or something like that. In addition, it classifies the ranks of the professional administrators according to their qualifications.

1 서론

지금 한국의 기록관리학계는, '公共機關의記錄物管理에 관한法律((1999.1.29., 법률 제5,709호; 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약칭함)'이 공포된 후 만 4년을 넘기고 있고, 2004년부터 이 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 처하여 있다. 이에 즈음하여, 그 동안 한국기록관리학계와 그

현장은 이 법률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제2장에서 논술하는 바와 같은 적지 않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개선되고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먼저, 제2장에서 우리나라 국가기록물관리의 현황을 크게 조망하여 보면서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추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제2장의 분석에서 추출된 문제, 즉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 문제, 2)국가기록물 보존서고의 신축과 관련한 문제, 3)기록물관리법의 법령 개정·보완의 문제, 4)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 문제 등을 각 장(章)으로 구분하고, 이들 각 장에서는 해당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그 문제점에 따른 해결책을 각각의 제언으로 삼고자 한다.

2 우리나라 국가기록물 관리의 현황

1999년 1월에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국가기록물 관리 및 그 동안의 변화 양상(樣相)은 크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측면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제 이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분리하고, 먼저 긍정적인 측면의 변화 양상부터 논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위 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나 대학교 및 특수기관에 '기록보존소'·'지방기록보존소' 또는 '자료관' 등이 전국적으로 각각 그 일부가 설립되는 개가를 올렸다. 특히 강원도(江原道)는 2001년도에 기록관리업무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¹⁾ 재정자립도가 그리 높지 않은 강원도에서 이와 같은 강한 의욕을 보인 것은 당시 해당도청(道廳)의 기록관리담당 공무원²⁾의 사명감과 예지력(叡智力)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지자체(강원도) 당국의 기록관리에 대한 준비와 인식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

1) 강원도(江原道)는 2001년도에 기록관리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프랑스·일본·중국' 4개국에 기록관리담당 공무원 10여명을 연수·파견한 결과를 [연수보고서]로 발간하고(강원도 2001a), 이 성과에 힘입어 강원도(江原道)는 당해 도청을 비롯한 전 강원도의 시·군·읍·면·동에 이르기까지의 기록관리담당 공무원 총 268명 전원(全員)을 망라·소집하여 '기록관리 연찬회'(강원도 2001b)를 1박 2일간 실시하는 등 기록관리업무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2) 강원도(청) 총무과 기록관리담당(5급) 함석근(咸錫根)씨.

된다.

둘째, 1999년 이후 기록관리학의 교육과정이 전국 10여개 대학교의 대학원에 협동과정 또는 단독학과의 단위 전공으로 석사과정이 개설되었고, 1개 대학교(연세대학교)에는 기록관리학전공 박사과정이 설립되었으며, 학부에도 기록관리학 전공을 개설한 대학교(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기록관리학 전공)가 등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기록관리학의 전문가 양성에 돌입하였다.³⁾

셋째, 무엇보다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그 동안의 진전은, 우리나라 기록관리학계의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정부기록보존소>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국가기록물(國家記錄物) 보존서고(保存書庫)의 신축과 관련하여 독립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써의 사옥(舍屋)을 마련할 수 있는 부지(敷地)를 수도권 내에 확보하게 되었고, 연이어 이 건물의 설계까지 완료함으로써,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가기록물관리청사의 완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도 이제 비로소 국가기록물과 관련한 독립된 건물(建物)과 그 기능(機能)을 확보(確保)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특기(特記)할 수 있다.

넷째, 또 다른 고무적인 현상은, 근자에 노무현정부 즉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의 직책 중 '통치사료비서관(統治史料秘書官; 1급)'의 명칭을 '국정기록비서관(國政記錄秘書官; 1급)'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즉 이 사항은 대통령의 직무를 종래 '통치'의 개념으로 간주(看做)하던 것을 '국정기록'의 개념으로 그 인식(認識)을 전환(轉換)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명칭에서 우리는,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하여 기록물관리법의 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해석하여도 좋을 만큼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2003년 3월 현재, 전국 대학교의 대학원이나 학부에 기록관리학 학과 또는 전공이 개설된 현황 및 개설 세부영역 사항을 살펴보면,

- ①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 명지대학교.(1개교)
- ②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석사과정): 연세대학교, 청구대학교.(2개교)
- ③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박사과정): 연세대학교.(1개교)
- ④ 일반대학원 사학과 기록관리학전공(석사과정): 원광대학교, (1개교)
- ⑤ 일반대학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전공(석사과정):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한남대학교, 목포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남대학교, 서울대학교.(7개교)
- ⑥ 대학교 학부(지식정보학부) 기록관리학전공(학사과정): 한성대학교(1개교)

4) 2007년에 준공될 이 건물에는 <대통령기록관>이 동시에 입주(入住)할 예정으로 있다.

다섯째, 최근 <정부기록보존소>는 국가기록물의 대국민 정보서비스의 강화(強化) 및 <정부기록보존소>의 기능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중위 하나로, KBS TV의 역사스페셜 프로그램의 제작에 <정부기록보존소>가 소장(所藏)하고 있는 현대의 국가기록자료를 활용하도록 조처하고, 그 프로그램의 명칭을 “역사스페셜 2003특별기획 - 발굴! 정부기록보존소”로 명명할 것을 기획중에 있다고 한다.⁵⁾ 우리나라의 일반국민에게는 아직도 생소하게 느껴지는 <정부기록보존소>의 기능과 역할 등을 국영방송매체를 통하여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판단된다. 이러한 기회에 <정부기록보존소>의 중요성 및 그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여론화시킴과 동시에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을 제고(提高)시킬 수 있도록 이 기관과 관련학계는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작금(昨今)에 봉착(逢着)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난관(難關)들은 지금부터 반드시 개선(改善)되어야 할 과제(課題)로 남아 있다.

첫째,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를 거치며 역대 대통령기록물들은 그들의 퇴임에 임박하여, 후대(後代)에 공개될 경우 그들에게 불리(不利)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기록물들은 각각 의도적으로 파기(破棄)하거나 은닉(隱匿)함으로써, 해당 대통령기록물 중에서 그 일부를 각각 멸실(滅失)시킨 점에 대하여 국민적인 비난의 여론이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물의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누차 강조됨으로써 김대중정부에 의하여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는 국가기록물을 담당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位相)을 정립하지 못하고 방치(放置)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국가기록물에 관한 관리업무는, 그 이전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의 ‘2급 국장’이 <정부기록보존소>의 기관장직을 수행하는 이른바 하급기관의 지위를 먼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국가기록물관리업무의 중요도에 관한 문제는 행정자치부 내에서도 ‘서무담당의 후순위 업무’라는 인상(印象)에서 아직도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처하여 있다. 이는 두 말할 나위 없이 현재 국가기록물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실상가상으로 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한 김대중정부를 대변(代辦)할 수 있는 김대중대통령

5) 2003년 5월 첫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한 시간 동안 약 1년에 걸쳐 50회 방영 예정.

기록물은, '그의 은퇴 이후 그 기록물들이 온전하게 모두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의문(疑問)과 회의(懷疑)적인 반응만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사항은 국가기록물의 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학자뿐만 아니라 위정자(爲政者)와 행정관료 및 우리 국민 모두가 역사 앞에서 수치심(羞恥心)을 가져야 하는 치욕(恥辱)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하여 국가기록물의 올바른 관리에 관한 기대는 이제 '참여정부'에 까지 표류(漂流)하여 오게 되었다.

둘째,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후, 이 법률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의 경과조치의 기간을 두었다.⁶⁾ 그러나 2003년 제1사분기 현재 각급 공공기관에서 기록물관리법의 실행을 위한 준비가 그리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즉, 전국 1700여개 공공기관 중 2004년부터 '(기록)자료관'의 설치를 위한 관련 예산을 배정한 기관은 2003년초 현재 불과 90여개 기관에 불과하다는 전언(傳言)이 있다.⁷⁾ 이는 일선의 시·군·구 등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자료관>의 설치에 관한 기획이 확립되고 있지 않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에서는, 결재를 획득한 기안문서 등의 기록물은 그 관리와 보존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반면에 영구보존을 위한 기록물(문서)을 생산할 때, 그 사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당해 업무와 관련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파생되는 상세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비공개(非公開)기록물⁸⁾에 대한 생산의무나 그와 관련한 비밀보호의 규정 등은 전혀 마련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정책이나 최종결정에 대한 결과만 존재할 뿐, 그 과정 등에 대한 상세내용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기록물들을 일정기간 비공개로 관리·보존하도록 의무화한다면, 후대의

6) 이 법령의 시행령 부칙 제2조, 참조.

7) 다시 말하여,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양호한 지방의 중대도시 등 단위 기관에서는 <자료관>의 설치를 위한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각 급 공공기관에서 기록물 관리기관이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수방관(袖手傍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郡) 단위의 공공기관에서 <자료관>의 설립 문제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아예 화제(話題)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8) 여기서 비공개기록물이라 함은 해당 공무(公務)의 입안부터 결정까지의 진행내용 및 그 배경 등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회의록·조사연구검토서·의사결정자의 메모 또는 노트 및 비망록(備忘錄)·해당 업무와 관련한 인사들의 방문일정표·관련 시청각자료' 등, 해당 업무와 관련한 모든 기록자료를 말한다.

실무자 및 연구자들이 관련 업무에 대한 배경 및 그 상세한 시행과정을 정확하게 포착함으로써, 역사적으로도 투명한 공무의 수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기록물을 남길 수 있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재의 기록물관리법에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은 기록관리학전공 석사 학위 이상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에 위배(違背)되며 또한 헌법(憲法)에도 배치(排置)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제한은 기존의 기록물관리담당 공무원에 대한 자격과 업무부여의 여지 및 그들의 입지(立地)가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은 실정에 처하여 있다.

한편, 위와 같은 한국기록관리의 현황과 관련하여, 최근 학계의 일각(一角)에서는 <정부기록보존소>의 소장(所長)직에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자’는 등의 주장도 불거지고 있다.⁹⁾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가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왜 위와 같은 희비(喜悲)와 명암(明暗)이 무려 4년 동안이나 교차되면서 계속 맴돌고 있기만 하고 있는가? 그 대처방안은 없는가?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우리나라 국가기록물의 관리에 있어서 봉착하고 있는 여러 현안 중 다음과 같은 4가지 문제에 국한하여 그 단계적인 해결책으로써의 제언을 모색하고자 한다.

-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 문제
- 2) 국가기록물 보존서고의 신축과 관련한 문제
- 3) 기록물관리법의 법령 개정·보완의 문제
- 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 문제

3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 문제

제2장에서 간략하게 논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기록물을 총체적으로 관리·담당하는 ‘국가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대표적인 국가기관은 <정부기록보존소>로

9) <http://rikar.org/news1/notice/index.php?mode=view&uid=1788&no=1>

지정되어 있다.¹⁰⁾ 논술의 편의를 위하여, 기록관리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프랑스·호주·중국 등의 국가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우리나라의 현황을 비교하여 표로 작성하면 <표 1>과 같다. 이제 <표 1>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세계 국가기록관리기관의 현황

구분	미 국	프 랑 스	호 주	중 국	한 국
명칭 소속 위상	국립기록관리청 독립기관 장관급	기록국 문화부 소속 차관급	기록관리청 문화부 소속 차관급	중앙당안관 국무원소속 차관급	정부기록보존소 행자부 소속 국장급
인력	2,907명	945명	399명	1,200명	131명
예산	2억6천만불 (2001년) = 3,120억원		1억5천만불 (2001년) = 1,180억원		112억원
건물 규모	국가상징물로서의 독립건축물 지상6, 지하2층 연건평 5만평 서고 2만여평 서가 총 840km	독립건축물 서가 중앙 420km 도립 1,135km 시립 500km	국가대표 독립건축물 서가 457km	국가대표 독립건축물 연건평 16,553평 서고 7,160평	독립건물 없음 연건평 5100평 서고 3,600평 서가 75km
소장량	1,850만권	1,400만권	1,220만권	1,200만권	185만권
산하 기관	대통령기록관(10) 연방보존센터(15) 지역보존(13)	도립보존소(103) 시립보존소(120) 병원보존소	지소(7) 시청각물보존소	제1역사당안관 제2역사당안관	부산지소 서울사무소
지방 조직	주립보존소(50) 하급보존소다수	기록국 하부조직	주립보존소(6)	성·시·현 당안관(3,303)	없음

※ 출처: 정부기록보존소, 2002, “국가기록물서고신축 기본계획”, p.6.

첫째, 미국 국가기록물의 대표적인 관리기관인 <국립기록관리청(NARA)>은 독립된 기관으로서 그 기관장이 ‘장관급’에 속하고, 프랑스와 호주 및 중국의 경우도 공(共)히 그 기관장은 ‘차관급’에 해당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정부기록보

10)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존소>는 현재 행정자치부 내 ‘2급국장’이 그 기관장의 소임(所任)을 맡고 있는 이른바 ‘하급기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位相) 또한 행정자치부 내에서도 ‘서무담당의 후순위 업무’라는 인상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처하여 있어서(김재순 2000, 7), 국가기록물의 관리업무가 아직도 행정부 내에서도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처하여 있다.

둘째, 국가기록물 관리기관의 ‘전문인력’의 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미국은 2,907명으로 우리의 경우 131명 보다 무려 2,219%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프랑스는 우리보다 720%, 호주 또한 우리보다 300%, 중국은 우리보다 900%가 많은 인력을 확보하면서 그 조직을 가동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국가기록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전문인력의 수적(數的) 확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예산’의 문제 또한 2001년을 기준으로 하여 보았을 때, 미국은 우리보다 2,785%를 증가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호주 또한 우리보다 1,053%를 증가하는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우, 조직의 활성화와 전문인력의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의 확충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건물의 규모 및 입지’의 문제를 비교해 보면, 미국·프랑스·호주·캐나다·이탈리아·중국 등 기록관리의 선진국들은 국가기록물 관리기관을 공히 각국의 수도(首都) 시내(市內)에 입지시키면서 하나같이 웅장(雄壯)한 독립건축물(獨立建築物)과 넓은 부지(敷地)를 확보함으로써, 이들 기관이 국가를 대표(代表)하는 상징(象徵)기관으로서의 기능(機能)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임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김성수·서혜란 2002, 58-59). 반면에 우리의 <정부기록보존소>는 현재 독립된 청사(廳舍)조차도 확보하지 못한 채 대전의 정부종합청사 건물 중 극히 일부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처하여 있다. 우리의 경우도, 다음 장(章)에서 논술할, 2007년도에 완공될 ‘국가기록물 보존서고의 신축건물’을 우리나라 국가기록관리의 상징적이면서도 대표적인 건축물로 활용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기록자료의 소장량’ 등에서 우리는 세계 각국과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이고, 기록관리기관의 ‘산하조직’의 규모 또한 우리는 너무 열악(劣惡)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지방조직’은 현재 전무(全無)한 실정에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기록물 관리업무가 정부 부처 내에서 왜 위와 같은 위치와 대우를 받고

있는가? 이는 두 말할 나위 없이 현재 국가기록물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중앙기록물관리 기관'으로서의 <정부기록보존소>가 그 기능상의 자기 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 이른바 그 '위상(位相)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 문제는 한국기록관리학회·한국기록관리협회·국가 기록연구원 등 여러 전문연구단체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연구·건의되어 왔다.

게다가 <정부기록보존소> 또한 1998년에 기록물관리법을 성안(成案)할 당시, 미국의 '국립기록청(NARA)'과 같은 별도기구의 설치를 검토한 바 있다(김재순 2000, 9). 그러나 그 당시 '작은 정부'를 표방하던 김대중정부의 정치적 입장으로 인하여, <정부기록보존소> 위상 승격의 문제는 좌초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참여정부'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의 직책 중 '통치 사료비서관(統治史料秘書官; 1급)'의 명칭을 '국정기록비서관(國政記錄秘書官; 1급)'으로 변경한 사례는 앞 장(章)에서 이미 논급하였다. 국가의 천년대계(千年大計)를 위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승격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은 이 참여정부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기록보존소>의 기능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부 소속의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문화재청>은 이미 차관급 기관으로 승격되었거나 그 승격을 눈앞(目前)에 두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참여정부 체제에서, 국가기록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선진외국의 사례와 같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 또한 차관급 기관으로 반드시 승격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현재 국가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정부기록보존소>의 소속 및 편제(偏在)는 현재의 행정자치부 산하(傘下)에 그대로 두고, 그 위상(位相)을 최소한(最小限) 차관(次官)급의 기관으로 승격시키면서 그 명칭(名稱)을 '국가기록관리청(國家記錄管理廳)'이라고 명명(命名)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하겠다. 아울러 그 산하에 적어도 '5개 국(局)'의 조직을 편성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책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기록물'이란, 행정부를 비롯한 입법부·사법부 등에서 생산하는 기록물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과 사립기관 및 역사적으로 개인이 생산한 기록물 등 국가의 총합(總合)적인 기록문화유산(記錄文化遺産)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정의(定義)할 수 있다. 그리고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生産)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臺帳)·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電子文書)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를 말한다”¹¹⁾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중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생산·접수되는 기록물 중에서 행정부에서 생산·접수되는 기록물이 그 절대다수를 점유하고 있음은 이미 주지(周知)하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편재(遍在)는 현재와 같이 행정부 산하의 행정자치부에 소속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¹²⁾ 게다가 2004년부터 광역시와 각 도(道)에 설치하는 <지방기록보존소> 및 각 시·군에 설치하는 <자료관>이 모두 궁극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소속되는 기관이며, 이들 <지방기록보존소> 및 <자료관>의 설치에 행정자치부의 전폭적(全幅的)인 지원(支援)이 없이는 이들 기관의 원활한 설치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하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관급’으로 그 위상이 승격된 <국가기록관리청>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차관급 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³⁾

그렇다면,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를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그 위상은 승격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공기록물 즉 국가기록물들은 모름지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집중 수집될 수 있도록 현행 기록물관리법을 개정·보완하면 될 것이다.¹⁴⁾ 즉, 우리나라의 행정부를 비롯한 입법부·사법부 및 여타 특수기관 등에서 생성되

11) 기록물관리법, 제2조 2항.

12) 물론 미국의 경우와 같이, <국가기록관리청>이 대통령직속기구로 편재되면서 ‘장관급’의 기관으로 정착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기록보존소>가 이른바 ‘2급 기관’에 머물러 있는 현황을 고려한다면, 그 조직이 단기간 내에 장관급의 기관으로 격상될 만큼 성장하려면 아무래도 줄속과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단 행정자치부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그 조직을 먼저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10년 후 또는 20년 뒤에 국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미국의 체제와 같이 대통령 직속 장관급의 기관으로 그 조직을 성장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3) 현재 우리나라 기록관리학계의 일각에서는 <정부기록보존소>의 직제에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없지 않다. 하지만 <정부기록보존소>라는 기관이 현재 ‘2급 기관’에 지나지 않는 현황(現況)을 고려한다면, 행정부의 조직 속에서 개방형 직위제로 부임한 기관장 혼자서 어떻게 삼부(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복잡다단한 관련 부서와 대결 또는 설득하면서 해당 업무의 협조 등을 받아 낼 수 있겠는가? 게다가 현재의 조직을 ‘차관급’으로 성장시키는 데에도 행정부 특히 행정자치부의 관련 고급관료가 적극 참여하여, 이들이 정부조직개편위원회 및 관련 부처 등의 여러 부서들을 설득하면서 각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와 양해가 수반되어야 비로소 그 위상의 정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의 ‘2급 기관’ 단계에서 서둘러 ‘개방형 직위제’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만 낳을 것으로 판단된다.

14) 기록물관리법 제6조.

는 국가의 모든 공공기록물들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집중 수집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¹⁵⁾ 그렇게 하여야만 비로소, 그 명칭에 걸맞게 “한국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¹⁶⁾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기록물을 관장(管掌)하는 기관”이라고 올바르게 정의(定意)될 수 있을 것이며, 그 기능 또한 손상되지 않고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기관에서 모든 국가기록물들이 관리·보존됨으로써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효율과 기능을 명실상부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그 관련 법령을 반드시 개정·보완하여야 할 것이다.¹⁷⁾

위와 같이 기록물관리법에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이 현재보다 대폭 확장되는 방안으로 그 법령이 개정·보완된다면, 현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정부기록보존소>의 조직은 적어도 ‘5개 국(局)’으로 편성되는 조직구조로 자연스럽게 성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조직이 차관급의 기관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록보존소>는 현재의 ‘2급 기관’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그 위상이 승격되어야 하며, 승격된 기관의 명칭은 “국가기록관리청(國家記錄管理廳)”으로 명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이 기관이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국가기록물 즉, 행정부와 입법부 및 사법부 등 국가적인 모든 공공기록물들을 명실상부하게 관장할 수 있도록 그 법령을 개정·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승격된 기관의 소속 문제는 현재와 같이 행정자치부 산하에 편성하고, 행정자치부는 향후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각지에 설립될 <지방기록보존소> 및 <자료관>의 설치에 그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15) 이론적으로 볼 때, 입법부와 사법부 등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들은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우선적으로 집중 수집되고 또 관리·보존되어야 할 중요한 국가기록물이다.

16)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기관에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기록물 뿐만 아니라 영구보존의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도 모두 집중시킴으로써,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모든 가치있는 국가기록물들을 관리·보존하도록 조치되어야 비로소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명명(命名)할 수 있을 것이다.

17) 현재의 기록물관리법의 법 제도에서는, 입법부와 사법부 등에서 생산되는 기록물과 관련하여 특수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설치와 그 운영을 방만하게 늘어놓음으로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킴과 동시에 그 기능과 역할마저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절름발이의 상태에 직면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4 ‘국가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사업’ 문제

<정부기록보존소>는 2002년 7월에, 현재 ‘기존 서고의 3년 이내 만고(滿庫)’ 예상에 따라 국가기록물의 종합적 보존·활용센터 구축의 필요성에 의하여, 대통령기록관이 함께 입주하는 서고의 신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위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정부기록보존소>는 한국기록관리학회와 국가기록연구원에 위 신축 서고 건축의 필요성 및 입지선정의 문제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었다. 한국기록관리학회에 위탁된 연구용역에서, 필자는 신축되는 서고 입지(立地)의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권 내 몇 군데의 후보지(候補地)와 그 입지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김성수·서혜란 2002, 60-61). 이 연구 및 필자의 자문에 의하여, <정부기록보존소>는 필자가 강력하게 추천한 후보지(候補地)인, 수도권(首都圈)에 속하는 성남시 소재 ‘국제연구교류단지’ 내에 약 12,800평의 부지를 마침내 확보하였고, 2003년도에는 건물의 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도부터 그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까지 보존서고를 완공하며, 2008년도에 그 시운전 및 입주가 가능하도록 현재 그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위 국제교류단지 내에 보존서고가 신축될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지형(地形)은, 그 산세(山勢)에 있어서 그 앞이 탁 트이고 배후(背後)에서 양 옆으로 길게 산으로 부드럽게 감싸 내려오는 형국(形局)을 취하고 있음으로써, 앞은 넓고 평평하며 뒤는 좁고 우묵하게 생긴 부지의 모양이다. 이는 곡식 중에서 겨·티끌·싸라기를 골라낼 때 쓰이는 농기구인 ‘키’의 모양과 흡사(恰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신축서고의 입지는, 바로 그와 같은 ‘키’ 속에서 싸라기·겨·티끌 등에 비유(比喻)되는 잡(雜)된 기록정보는 모두 골라냄과 동시에 소중한 곡식들에 비유되는 중요(重要)한 국가기록정보(國家記錄情報)들만을 차곡차곡 뒤로 모아들여 축적(蓄積)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중요 국가기록물들이 이 ‘키’ 모양의 형국 속으로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집·관리·보존될 수 있는 상징적인 바로 그 위치에 지금 신축건물을 설계·건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신축서고의 입지는 이른바 풍수지리(風水地理)의 측면에서도 명당(明堂)으로 손꼽힐 수 있는 길지(吉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중요 국가기록물을 관리하고 보존해야 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이 위와 같이 풍수지리의 측면에서도 명당자리에 위치하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

정부기록보존소>의 헌신적인 노력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신축 보존서고의 건물이 완공되면, 풍수지리적인 지형의 명분에 걸맞게 국가의 모든 중요기록물이 효과적으로 여기에 집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신축건물의 건축계획과 관련하여 <정부기록보존소>가 공개하는 “국가기록물 서고신축 기본계획”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보면, 국가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국제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총건평 약 15,000평으로 그 건물을 설계하고 있다. 이 규모는 중국의 <중앙당안관>보다 조금 적은 규모로,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적당한 규모의 건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 건물의 건축경비로 약 1,500억원의 소요예산을 제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평당 건축단가를 ‘1천만원’으로 책정한 결과이다. 이 건축단가는 최근에 건축중인 지방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건축단가보다 낮게 책정한 결과이다.¹⁸⁾

그 결과, 이 예산은 기록물의 보존기능만을 위한 최소의 건축경비만 책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신축 건물의 설계에 당선된 설계조감도를 참고하여 보면, 신축 건물의 입구나 로비 또는 그 건물의 중앙 홀(Hall) 주변에 위치하여야 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록물이나 위인(偉人)들의 형상 등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적 조형물 및 장식물의 설치에 대한 소요 경비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주장하건대, 이 건물에는 우리나라 국가기록물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및 장식물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가의 역사가 불과 200여 년 밖에 되지 않는 미국만 하더라도 국립기록관리청(NARA)과 의회도서관(LC)을 보면, 이 두 건물은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각각 대표한다 하여도 파인이 아닐 만큼 그 건축과정에서 건물(建物)의 예술(藝術)적인 조형물과 장식에 심혈(心血)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오늘에 이르러서도 전 세계의 지성인이나 일반시민들이 이 건물들을 방문하여 그 건축물을 감상하는 세계적인 관광(觀光)의 명소(名所)가 되고 있다.

우리도 이제 위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가기록물을 총괄(總括)하면서 동시에 한국을 상징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독립적인 건축물을 가져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따라서 위에서 논술한 신축 보존서고를 국가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기록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독립건축물로 삼으면 될 것이다. 게다가 이 신축 건물에 대통령기록관이 함께 입주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신축 건물이야말로 국가를 대표하는 중앙기록물관리

18) 최근에 건축되는 ‘울산시립박물관’의 평당 건축단가는 ‘1,236만원’에 이르고, ‘대구시립미술관’의 경우 그 단가는 ‘1,124만원’에 책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정부기록보존소가 위 건물의 총사업비 중 현재 확보한 예산은 499억원에 불과하다(정부기록보존소 2002, 13).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완수하도록 그 임무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기능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신축 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약 1,500억원의 예산에, 위에서 논급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록물 등을 상징하는 예술적(藝術的)인 조형물 및 장식물의 설치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추가로 확보하여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기획예산처>에서는 '국가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사업'에 현재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1,000억원의 예산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기록물 관련 예술 조형물·장식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추가예산을 기꺼이 지원(支援)하여야 할 것이다.¹⁹⁾

요컨대 신축되는 위 보존서고의 건축물이, 우리민족의 5,000년이라는 유구(悠久)한 역사와 문화를 웅변(雄辯)함과 동시에 향후 몇 세기(世紀) 동안 명실상부(名實相符)하게 우리나라의 기록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독립된 건축물로서 대표적인 국가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수준의 건축물로 완공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이 건물이 완공되는데 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5 기록물관리법의 법령 개정·보완의 문제

[公共機關의記錄物管理에 관한法令(기록물관리법)]이 1999년에 제정되면서, 이 법령이 처음 만들어진 법이란 점에서 그 반응은 비교적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 후 4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하면서,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발전을 위하여, 이 법령에서 부분적으로 개정 및 보완되어야 할 조항들이 서서히 여론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즉, 현행 기록물관리법에는

1)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항(條項)을 방만하게 지정함으로써, 중앙기록물관

19) 국가적인 기록물과 관련한 예술적 조형물 및 장식물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기록물의 관리·보존을 위한 최신식장비의 구입 등에 투입되는 추가예산은 도합 약 300억원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예상된다. 그리하여 신축되는 이 건물은 미국의 <국립기록관리청(NARA)>이나 <의회도서관>에 비견(比肩)될 수 있도록, 그 규모가 웅장하면서도 우리의 유구한 국가기록물을 상징하는 조형물 및 장식물의 설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리기관의 기능(機能) 및 그 위상(位相)이 상대적으로 대폭 축소되어 있다.

- 2) '비공개기록물'의 보호기능 및 생산의무의 규정 등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조건을 너무 제한하고 있다.

는 여론이 아주 강하다.

이제 위의 1)과 2)에 대한 문제점들은 본 장에서 다루고, 3)의 전문요원 자격 기준의 문제는 다음 장(章)에서 별도로 논술하고자 한다.

5.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 강화에 관한 문제

현행 기록물관리법 제5조 제2항의 각호(號)에 명시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수행 업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국가 기록물관리의 기본정책의 결정 및 제도의 개선’에서 시작하여 ‘국가기록물의 수집·지정 및 보존·활용’·‘기록물관리기관의 지도(指導)·감독(監督)’ 등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기록물 및 그 관리기관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부와 사법부 및 국가의 중요 특수기관 등에서 생산되는 기록물과 관련하여, 현행 기록물관리법 제6조에서는,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국가정보원(구(舊) 국가안전기획부)·군(軍)기관 등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²⁰⁾ 그리하여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이와 같은 특수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설치와 그 운영을 방만하게 늘어놓음으로써, 상대적(相對的)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을 대폭 축소시킴과 동시에 이 기관의 기능과 역할마저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이른바 절름발이의 상태라는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게다가 지금의 기록물관리법에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정부기록보존소>는 행정부에서 생산되는 정부기록물들에 국한하여 수집·관리·보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 기능을 대폭 축소시켜 버린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리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기록물 및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지시·감독 및 통정(統

20) 이 조항의 의미는 입법부와 사법부 등의 국가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그 기관 내에 별도의 특수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라 해석할 수 있다.

제 및 調整)하도록 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다.

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할 당시 왜 위와 같은 비정상(非正常)적인 상황을 초래하였는가?

<정부기록보존소>는 1998년에 기록물관리법을 성안(成案)할 당시, 가칭 ‘국립기록청(미국의 NARA(국립기록관리청)의 개념)’이라는 별도기구의 설치를 검토한 바 있다(김재순 2000, 9)고 한다. 그러나, 그 당시 소위 ‘아이엠에프 체제(IMF 신탁통치)’하에서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예산의 축소에만 신경쓰던 김대중정부의 정치적 입장으로 인하여, <정부기록보존소> 위상의 승격은 좌초되고 말았다고 한다. 즉, 당시 이와 관련한 정부의 해당 업무의 관계자들은 “별도기구의 설치는 절대 안된다. 만약 별도기구의 신설을 전제로 하는 법률제정을 추진한다면 아예 단념하라(김재순 2000, 9)”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록물관리법의 성안·제정 당시부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 승격의 문제는 좌초(坐礁)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 결과, 기록물관리법의 제정에 있어서 국가기록물관리기관의 승격된 기구의 설치에 대한 기획이 무산(霧散)된 상태에서,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본체계를 3권 분립의 질서에 따라 분산보존(分散保存)하되, [기록물관리의 표준화]를 통하여 국가기록물의 집중보존의 효과를 보장한다’는 차선책(次善策)으로 제정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의 천년대계(千年大計)를 내다보고 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해야 할 시점에서, ‘아이엠에프’라는 그 작은 단 하나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다만 미시적(微視的)인 현황에서 차선책의 법률이 제정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제 새로 출범한 ‘참여정부’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²¹⁾

그렇다면, 이 참여정부에서 현재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공기록물 즉 국가기록물들은 모름지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집중되고 수집될 수 있도록 현행 기록물관리법을 개정·보완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즉, 현재 기록물관리법의 제5조 및 6조의 각 조항을 조금씩 수정(修訂)하여, 우리나라의 행정부를 비롯한 입법부·사법부 및 여타 특수기관 등에서 생성되는 국가의 모든 공공기록물들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집중·수집·관리·보존할

21) 참여정부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의 직책 중 ‘통치사료비서관(統治史料秘書官; 1급)’의 명칭을 ‘국정기록비서관(國政記錄秘書官; 1급)’으로 변경한 사례는 제2장(章)에서 이미 논급하였다. 이러한 명칭의 변경은 ‘참여정부’의 대통령업무를 비롯한 행정부의 업무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국정기록물’로 인지(認知)한다는 발상(發想)의 전환이라 하겠다.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법의 본 법률과 시행령 등에서 그 해당 조항을 조금씩 개정하기만 하면, 위에서 논급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본래의 기능과 업무의 수행을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당부권대, 입법부와 사법부 등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들은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최우선적으로 집중·수집되고 또 관리·보존되어야 할 중요한 국가기록물이다. 현재 처럼 행정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만을 국한하여 관리하는 <정부기록보존소>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1/3밖에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삼부(三府) 즉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등 국가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국가기록물들이 남김없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함께 수집·관리·보존될 때 비로소, “한국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기록물을 관장(管掌)하는 기관”이라고 올바르게 이 기관을 정의(定意)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의 중요기록물들은, 그 원본은 해당기관에 영구·보존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화된 복본(複本)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반드시 이관되어야 하며, 또 유사시(有事時)를 대비하여 ‘중요한 국가기록물일수록 그 복본이나 복제본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록물 분산보존의 원칙에도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 관계 법령을 하루빨리 개정함으로써, 개정된 법령의 효력을 받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모든 국가기록물들이 관리·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기록물관리법에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을 현재보다 대폭 확장하는 방안으로 그 법령이 개정·보완된다면, 현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정부기록보존소>의 조직은 입법부와 사법부 등 여러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들을 이 기관에서 수집·관리·보존함과 동시에 이들 기관들을 지도·감독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5개 국(局)’ 이상으로 확장·편성되는 ‘차관급 기관’의 조직구조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조직을 차관급의 기관으로 개편하고, 이를 인정(認定)받는 데에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요컨대, 위와 같이 현행 법령에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의 해당 조항을 하루빨리 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중

양기록물관리기관'은 우리나라 삼부(三府;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등 한국의 모든 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 생산되는 국가기록물들에 대한 총체적(總體的)인 기록물관리업무를 통정(統制·調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영구보존의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들에 대한 관리(管理)도 지도·감독하게 하여,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의 모든 가치 있는 국가기록물들을 관리·보존하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5.2 비공개기록물의 생산의무 및 비밀보호의 문제

우리나라 모든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은,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업무 즉 공무(公務)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록물들을 생산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해당 업무의 입안(立案)에서 결정(決定)까지의 과정에서 '회의록·업무중의 메모·조사연구검토서·비망록·업무관련자 방문일지' 등 수많은 기록을 남기게 마련이다. 이러한 기록물들은 현재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보안업무규정에 의거하여 그 보안사항을 유지할 수 있는 기록물이기 때문에 '비공개기록물'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위에서 논급한 비공개기록물들은, 해당 공무가 시행되는 배경 및 그 이유 그리고 공무의 상세한 과정 등을 소상하게 알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치는 문제점 및 그 시행상의 애로사항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요긴(要緊)한 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기록물관리법에서는 해당 공무의 결과만을 파악할 수 있는 이른바 '기안문서'만 보존 될 뿐, 위와 같은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생산의무의 규정'이나 '보호의 규정' 등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의 입안과정에서부터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생산되는 모든 비공개기록물들을 반드시 생산하도록 의무화시켜야 한다.

즉, 이를 법령의 조문(條文)으로 명문화(明文化)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비공개기록물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세대(30년) 이상의 일정기간 동안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 기록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이른바 '비밀보호의 규정'을 현재의 기록물관리법에 삽입하도록 함으로써, 관계 공무원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비공개기록물들을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6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 문제

기록물관리법 제25조에서는,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거한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40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에서는, 기록물관리를 위한 전문요원의 자격조건으로, '①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②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등으로 그 자격조건을 한정하고 있다.

위의 자격조건은, 물론 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할 당시, 기록물관리를 위한 전문요원의 자격조건을 위의 항목과 같이 규정한 데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발전을 위한 상당한 고심과 배려가 있었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냉정함을 유지하며 위의 자격조건을 고찰하다 보면 현실적인 측면이 간과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기록물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해서는 위의 두 조항에서 제시한 전문가 이외에도, 기록물관리를 위한 '보존(保存)전문가' 및 '복원(復原)처리 전문가' 등등 다방면의 인재를 전문요원으로 등용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태수 2002a, 34).

게다가 위 전문요원의 자격조건에는 현재 공공기관의 일선에서 기록물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존(既存)의 인력(공무원 등)에 대한 자격 부여 및 그 배려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즉,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기록물관리에 종사하여 온 현역 공무원에 대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정부기록보존소>)에서 일정기간 또는 일정 시수((時數) 이상의 보수교육 등을 통한 자격의 부여 및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왜냐하면, 현재 각 대학교의 대학원 등에서 배출되는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요원 배출에는 그 인원적인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향각처의 각 시·군·구의 현장에서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온 현장요원을 보수교육하여 기록물관리사로 흡수하지 않고는, 전국 1700개나 되는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기관을 2004년부터 거의 동시에 설치하는 데에 많은 애로사항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특수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전문직(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설정하는 데에는, 관계 해당 업무를 분석한 후, 정형화된 직군(職群)과 직렬(職列) 및 직류

(職類)를 설정하면서 관계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이나 기준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물관리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김태수 2002b, 5). 그런 연후에 위에서 제시된 정형화된 직렬화를 피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제시 없이 그냥 막연하게 전문요원의 자격조건을 한정한다면, 이는 국민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현재의 기록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보강(補強)시켜 지금보다 광범위하게 확대하여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개선방안이 요청된다. 이제 <표 2>의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관리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의 취득자로 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국내 학부과정에서 기록관리학 전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가 있으므로²²⁾, 기록관리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취득자에게도 그 자격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김태수 2002a, 35). 또한, 문헌정보학의 연구 및 교육 대상(對象)인 도서관정보자료와 기록관리학에서의 연구 및 교육 대상으로 하는 기록정보자료는 그 성격이 아주 유사(類似)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자료의 처리(處理) 및 관리(管理)의 방법론은 양자가 서로 동일(同一)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조건을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으로 확대한다면, 한성대학교의 사례와 같이 문헌정보학전공이 설치되어 있는 전국의 30여개 대학교에서 기록관리학전공을 추가로 설치·교육함으로써,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출하는 방안이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와 같이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전공자를 문헌정보학전공이 있는 전국의 각 대학교에서 배출한다면, 우리나라 기록관리기관의 현장에 소요되는 실무적(實務的)인 전문요원의 인력을 제대로 수급(受給)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저변(底邊)확대도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록관리학 전공자 이외에 ‘행정학·법학·물리학·화학·미생물학·제지학·전산학(컴퓨터학)·전자공학·기계학·미술학·문화재보존학 등’ 기록물관리를 위한 기초과목을 습득한 학사·석사학위 이상의 자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도 전문요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김태수 2002a, 35).

22)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에 기록관리학전공이 설치·교육됨으로써 기록관리학 학사전공자가 배출되고 있다.

셋째, 공공기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도 전문요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김태수 2002b, 5. 참고). 현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기록물관리의 실무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 기관에 위의 실무경력자들에 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전담(專擔)시키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표 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안²³⁾)

자 격	자 격 요 건
1급 기록관리사	1. 기록관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기록관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9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2급 기록관리사	1.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문헌정보학 또는 역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기록관리학 이외의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공공기관에서 기록물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로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위 <표 2>에 제시된 ‘1급 기록관리사’ 및 ‘2급 기록관리사’의 기준은, 현재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급하고 있는 사서자격증의 기준과 유사하게 제시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기존의 유사한 단체에서 그동안 관련 자격증을 부여하면서 시행착오를 이미 거쳐 확실한 검증 받은 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위와 같은 기록물관리기관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갖추면서, 한국기록관리협회가 그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이다.²⁴⁾

23) 이 표는, (김태수, 200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구분”, <제4회 기록물관리 보존 워크샵>, 서울: 한국기록관리협회, p.5.)의 해당 사항을 수정·보완한 것임.

24) 현재 한국기록관리협회에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 제정 및 그 자격증의 발급에 대한 연구를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이다. 추후 이 위원회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에 대한 관련 연구와 검토 후, 협회 차원의 실천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요컨대, <표 2>에서 제시된 개선안을 시행하였을 때 추후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김태수 2002a, 35. 참고).

첫째, 기록물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공동체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분야의 출신전문가들의 활동에 의하여 기록물관리에 대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록물관리 실무현장의 저변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관> 전문요원의 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손쉽게 인력을 충원할 수 있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제도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공공기관의 일선에서 기록물관리의 실무경력자들과 기록관리학 전공자들의 융화와 관련지식의 공유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7 결론 및 제언

이상의 본론을 요약·종합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국가기록물 관리의 현황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기록물관리법 제정 이후 한국 국가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서는,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의 제고(提高) 문제, 2) 국가기록물 보존서고의 신축과 관련한 문제, 3) 기록물관리법의 법령 개정·보완의 문제, 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 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파악하였다.

둘째, 제3장에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位相) 문제를 조명하여 보았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 내에서 '2급 국장'이 기관장을 맡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부는 물론이고 입법부와 사법부 등의 산하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들을 총합(總合)·수집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명실상부하게 종합적으로 관장(管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함을 파악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행정자

처부 내에서 최소한 차관급의 기관으로 그 조직을 성장·승격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제4장에서는 '국가기록물(國家記錄物) 보존서고(保存書庫) 신축(新築)사업'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이 신축 건물을 우리나라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국가(國家)를 대표(代表)하는 상징적(象徵的)인 건축물(建築物)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통령기록관도 아울러 입주하여야 함을 유념하여, 이 건물에 우리나라의 대표(代表)적인 기록물(記錄物)이나 위인(偉人) 등의 형상을 상징(象徵)할 수 있는 예술적 조형물(造形物) 및 장식물(裝飾物)의 설치가 요구됨을 주장하고, 이에 따른 <기획예산처>의 재정적 지원을 당부하였다.

넷째, 제5장에서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법령 개정·보완의 문제를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 강화의 방안, 2)비공개기록물의 생산의무화 및 비밀보호의 규정으로 구분하여 고구(考究)하였다. 그 결과,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제5조와 제6조 및 그에 따른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삼부(三府: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들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총합적으로 수집되고, 이 기관에서 모든 국가기록물들을 관장(管掌)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提案)하였다. 그리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누락되어 있는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생산의무 및 이들 기록물에 대한 비밀보호의 규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제6장에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현행기록물관리법의 시행령 제40조에 제시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조건을 완화(緩和)하여,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등을 그 최소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의 실무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이들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그 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밖에 본 장의 연구에서는 기록관리사의 등급과 그 자격요건을 각각 구분하여 보았다.

요컨대, 위와 같이 제기된 국가기록물관리의 현황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제언들을 수용하여 시급하게 개선·보완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기록물의 관리 및 그 제도가 정착(定着)되고,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가 국가기록물관리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원도 총무과 기록관리팀. 2001a. 2001 기록관리분야 담당공무원 해외4개국 연수보고서. 춘천: 강원도청.
- 강원도 총무과 기록관리팀. 2001b. 2001년도 기록관리담당공무원 연찬회. 춘천: 강원도청.
- 고산정야. 2000. “일본에 있어서 기록관리학의 발전현황과 기록관리학회의 역할”.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권 제1호(창간호, 2001. 3): 53-68.
- 김성수. 2002. “한국 공공기관 기록관리의 중·장기 정책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논집(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제25집(2002. 8): 25-50.
- 김성수·서해란. 2002. “대통령기록관의 설립 및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2권 제1호(2002. 3): 41-66.
- 김용원. 2000. “기록관리학의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권 제1호(창간호, 2001. 3): 69-94.
- 김재순. 2000. “기록물관리법 시행현황과 정책방향”. 기록보존 제13호. 7-17.
- 김정하. 2000.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교육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권 제1호(창간호, 2001. 3): 201-230.
- 김태수, 2002a, “기록관리의 전문교육과정 및 전문인력제도”,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2권 제1호(2002. 3): 7-39.
- 김태수, 2002b,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구분”. <제4회 기록물관리 보존 워크샵>. 서울: 한국기록관리협회: 1-5.
- 남효채. 2000. “한국기록관리행정의 변천과 전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권 제1호(창간호, 2001. 3): 19-36.
- 유위. 2002. “미래의 중국당안 관리 연구”. 제3회 기록관리학 국제학술대회. 기록매체의 보존관리. (2002. 7. 3. - 7. 5.), 연세대학교 삼남경영원: 19-22; 177-180.
- 정부기록보존소. 2002. “국가기록물 서고신축 기본계획”. 대전: 정부기록보존소 보존과.
- 최정태·윤송원. 2000. “기록관리학의 정립과 기록전문가 양성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권 제1호(창간호, 2001. 3): 95-130.

- 풍혜령. 2000. “중국 당안학의 현황 및 발전추세”.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권 제1호(창간호, 2001. 3): 37-52.
- 한상완. 2000. “한국기록관리학의 현황과 미래”. 한국기록관리학회 창립기념 국제학술대회.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기록관리학 발전방안과 미래. (2000. 7. 4.).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1-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권 제1호(창간호, 2001. 3): 9-18.
- 한상완·김성수. 2002a. “한국의 기록보존 현황과 발전방향”. 제3회 기록관리학 국제학술대회. 기록매체의 보존관리. (2002. 7. 3. - 7. 5.),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11-14; 167-176.
- 한상완·김성수. 2002b. “한국 기록관리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2권 제2호(2002. 9): 1-37.
- 한상완·김성수·윤대현. 2001. “한국 공공기관 기록보존관리 현황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권 제1호(창간호, 2001. 3): 131-152.
- 한상완·김태수·김성수·윤대현 외. 2002. 한국 공공기관 기록보존 관리의 현황과 중장기 정책. 서울: 한국기록관리학회·한국기록관리협회.
- 행정자치부. 1999.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5,709호)
- 행정자치부. 1999.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6,609호)
- 행정자치부. 1999.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78호)
- 호관용재. 2002. “조직의 지식과 경험의 전승 - 디지털시대에서의 일본의 기록관리 현황과 향후의 과제”. 제3회 기록관리학 국제학술대회. 기록매체의 보존관리. (2002. 7. 3. - 7. 5.),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33-42; 181-192.
- Cloonan, V. Michele. 2002. “Shifting from paper to Digital Records - Preservation?”.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2권 제2호(2002. 9): 137-148.

* 논문접수일: 2003년 3월 10일

* 논문심사일: 2003년 3월 15일